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중개정령
(1999.12.31 공포)

1. 주요 골자

가. 소화기구의 설치기준중 자동식소화기에 사용되는 가스누설 경보차단장치의 설치거리를 주방배관의 개폐밸브로부터 1미터 이내에서 2미터 이내로 완화함(제2조제1항제7호다목).

나. 옥내소화전설비의 수원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일정한 성능 이상의 비상전원용 발전기 또는 내연기관에 연결된 예비전동기 구동펌프가 설치된 경우에는 옥내소화전설비의 유효수량의 3분의 1 이상의 수원을 옥상에 설치하도록 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제5조제2항제6호 신설).

다. 스프링클러의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격자형 배관으로 설치하는 습식 스프링클러에 대하여는 펌프의 용량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스프링클러의 가지배관에 설치하는 헤드의 개수를 제한하지 아니하도록 함(제17조제2항제2호나목).

라. 포소화설비의 개방밸브 설치기준중 하나의 탱크에 고정 포방출구가 2 이상인 경우 포방출구마다 개폐밸브를 설치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제42조제5호).

마.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기동장치 설치기준중 수동식 기동장치의 부근에 소화약제의 방출을 지연할 수 있는 비상스위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소화장치의 기동으로 인한 불필요한 피해발생 등을 방지하도록 함(제49조제1항 후단 신설).

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설치기준을 개선하여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주수신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일반 수신기의 설치장소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화학공장·제련소·반도체 공장 등에 설치하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의 종류 및 설치기준을 명시함(제83조제3항제1호 단서 및 제85조제4항 신설).

사.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시설기준을 일부 완화하여 방화시설중 영업장의 비상구·출입문 등에 반드시 완강기를 설치하도록 하던 것을 완강기 외에 다른 피난기구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제143조의2제2호).

2.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중개정령(행정자치부령 제79호)

■ 제1조의2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어반"이라 함은 복합식 수신기에 설치하거나 복합식 수신기로 형식승인을 받은 후 복합식 수신기에 연결되는 각 설비별로 따로 설치하여 각 설비를 제어하는 장치를 말한다.

■ 제2조제1항제7호다목중 "1미터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을 "2미터 이내의 위치에 설치하되, 상시 확인·점검이 가능하도록 설치할 것"으로 한다.

■ 제5조제2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전동기 구동펌프(주펌프를 말한다)의 성능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비상전원용 발전기 또는 내연기관에 연결된 예비전동기 구동펌프가 설치된 경우

■ 제1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가지배관의 배열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토너먼트(tournament) 방식이 아닐 것

2. 교차배관에서 분기하는 지점을 기점으로 한쪽 가지배관에 설치되는 헤드의 개수(반자 아래와 반자 속의 헤드를 하나의 가지배관상에 병설하는 경우에는 반자 아래에 설치하는 헤드의 개수)는 8개 이하로 할 것.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기존의 방호구역 안에서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여 1개의 헤드를 증설할 경우

나. 습식 스프링클러에 격자형 배관방식(2 이상의 수평주행배관 사이를 가지배관으로 연결하는 방식을 말한다)을 채택하는 때에는 펌프의 용량, 배관의 구경 등을 수리학적으로 계산한 결과 헤드의 방수압 및 방수량이 소화목적을 달성하는데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중앙소방안전기술위원회 또는 지방소방안전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한다.

3. 가지배관과 스프링클러헤드 사이의 배관을 신축배관으로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가. 최고사용압력은 1제곱센티미터당 14킬로그램 이상이어야 하고, 최고사용압력의 1.5배의 수압에 변형·누수되지 아니할 것

나. 진폭을 5밀리미터, 진동수를 매초당 25회로 하여 6시간 동안 작동시킨 경우 또는 매초 1제곱센티미터당 3.5킬로그램부터 35킬로그램까지의 압력변동을 4천회 실시한 경우에도 변형·누수되지 아니할 것

■ 제42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선택밸브는 방유제 밖에 설치할 것. 다만, 방유제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탱크와의 수평거리를 두어야 한다.

가. 직경 15미터 미만의 탱크 : 15미터 이상

나. 직경 15미터 이상의 탱크 : 탱크의 직경 이상

■ 제49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수동식 기동장치의 부근에는 소화약제의 방출을 지연시킬 수 있는 비상스위치(자동복귀형 스위치로서 수동식 기동장치의 타이머를 순간 정지시키는 기능의 스위치를 말한다)를 설치

할 수 있다.

■ 제83조제3항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모든 수신기와 연결되어 각 수신기의 상황을 감시하고 제어할 수 있는 수신기(이하 "주수신기"라 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수신기를 제외한 기타 수신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85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장소에는 각각 분리형 광전식감지기 또는 불꽃감지기를 설치하거나 공기흡입형 광전식감지기를 설치할 수 있다.

1. 화학공장·격납고·재련소 등 : 분리형 광전식감지기 또는 불꽃감지기. 이 경우 각 감지기의 공칭감시거리 및 공칭시야각 등 감지기의 성능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전산실 또는 반도체 공장 등 : 공기흡입형 광전식감지기. 이 경우 설치장소·감지면적 및 공기흡입관의 이격거리 등은 제조자의 시방에 따른다.

■ 제85조제6항(종전의 제5항) 본문중 "제1항 내지 제4항"을 "제1항 내지 제5항"으로 한다.

■ 제87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영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장소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음향장치 외에 별도의 청각장애인용 시각경보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 제97조 각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7호 단서중 "제15조제3호 단서"를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대상으로서 제15조제3호 단서"로 한다. 이 경우 엘리베이터 내부에는 별도의 음향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 제98조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97조제7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계단실형 아파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35조제1항제1호중 "2차측의 주차단기 1차측에서 분기하여"를 "2차측의 주차단기 1차측 또는 2차측에서 분기하여"로 한다.

■ 제143조의2제2호중 "완강기"를 "피난기구"로 한다.

■ 제143조의3제2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가 아닌 경우 또는 지하층으로서 비상구·출입구가 건물의 구조상 지표면과 면하는 경우에는 비상구·출입구의 문은 불연재료를 사용하여 설치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정보센터 대리 우유진